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5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2024년 2월 20일
- 나. 제안자: 김지수 의원 외 6명
- 다. 회부일자: 2024년 2월 23일
- 라. 상정일자: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4. 3. 5.)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지수 의원)

제안이유

스마트폰 및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¹⁾ 등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로 인하여 해당 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노인의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6조제4호)
- 나. 자치법규 체계에 따른 조문의 정비 (안 제5조 및 안 제6조)

1) 키오스크(kiosk)

-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주문·결제,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단말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협조부서: 어르신복지과

다. 입법예고: 2024. 2. 23. ~ 3. 4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가. 개정취지

- 스마트폰 활용의 증가 및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보급 확대 등 스마트기기 사용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6조제4호에서 관내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추진 사항에 노인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을 신설함

현 행	개 정 안
제5조(건강증진) ① (생략)	제5조(건강증진)(현행 제1항과 같음)
제6조(사회·문화활동 장려) ①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사회·문화활동 장려)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노인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일상에서 개인 간의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대면” 생활이 보편화됨에 따라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기기 활용이 어려운 노인층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한국소비자원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22. 9.)」에 따르면 '21년 기준 국내 민간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 수는 26,574대로 '19년 대비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생활편의 분야에서 4.1배 증가하였고²⁾, 현 시점의 키오스크 보급 대수는 더욱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8.2%로('23. 12 기준 _ 통계청)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관내 노인인구³⁾도 전체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구는 노인층의 거주비율이 높은 편임
- 노인층의 키오스크 이용 비율은 익숙지 않은 키오스크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젊은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인 바, 이번 개정으로 어르신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 됨

2) 김상희 의원실, 「〈2021 국정감사 보도자료〉 요식업 및 생활편의 분야 키오스크 설치 4.1배 증가! 무인 매장은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아!」 (2021.10.8.)

3) 「관내 노인인구 현황」 (2021. 11월 기준)

노인 인구수(강서구)			전체 인구수(강서구)	
계	남자	여자	계	노인인구비율
92,036명	40,579명	51,457명	574,789명	16%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노인복지법」

-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